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4

발의연월일: 2020. 12. 1.

발 의 자 : 임이자 · 김영식 · 이종배

권명호 · 이종성 · 이주환

김형동 · 김성원 · 박성민

송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형식적으로 요청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도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을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지도기관과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재해예방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175조제6항).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은"을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으로,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를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이"로, "받아야"를 "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제6항제6호 중 "지도를 받지"를 "지도를 하도록 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
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	방 지도) ①
하는 <u>건설공사도급인은</u>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	<u> </u>
조에 따라 지정받은 <u>전문기관</u>	<u>전</u>
(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
<u>기관"이라 한다)에서</u> 건설 산	지도기관"이라 한다)이
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u>받</u>	<u>ই</u> }
<u>아야</u> 한다.	<u>도록 하여야</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
	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
	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⑤ (생	제175조(과태료)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6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u>지</u>	6 <u>খ</u>

<u>도를 받지</u> 아니한 자 <u><신 설></u>

7. ~ 18. (생 략)

⑦ (생략)

도를 하도록 하지-----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 1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